

회계책임자(선임)·(겸임)·(변경)신고서				
문서번호				
회 계 책 임 자	성 명	(한자 :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전 화 번 호
(선임)·(겸임)·(변경)연월 일		년 월 일		
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				
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	예 금 주	금융기관명	계 좌 번 호	비 고
수입용				
지출용				
<p>「정치자금법」 (제34조제1항)·(제34조제3항)·(제35조제1항) 및 「정치자금사 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(선임)· (겸임)·(변경)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○ (인)</p>				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. 정치자금 수입·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(예금계좌 개설 신고서) 3.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.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·인수서 1부(변경신고서) 				
<p>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,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 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. 2.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. 3.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(정책연구소, 정당선거사무소를 포 함한다)대표자, 후원회대표자,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,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, 당대표경선후보자등,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. 				